

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

업체명		대표자 성명
		사업자등록번호
소재지	(전화번호:)	
임무		
지정 사유		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귀 업체를 위와 같이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. 년 월 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인		